##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44 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김정호ㆍ이수진ㆍ최기상

박희승 • 전진숙 • 이연희

윤후덕 • 정성호 • 임미애

허종식 · 이훈기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민법」 제197조 제목 중 "태양(態樣)"이라는 표현은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, 조문의 제목만 보았을 때 해당조문에서 어떠한 내용을 규정할 것인지 유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

법치국가에서 법률 문장은 일반 국민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표현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.

이에 "점유의 태양"이라는 법문 표현을 "점유의 모습"으로 개정하고 자 함(안 제197조).

법률 제 호

##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7조의 제목 "(占有의 態樣)"을 "(점유의 모습)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197條(占有의 態樣) ① ・ ②	第197條(점유의 모습) ① • 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